

제4장 임원

-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이사장 1명, 차기이사장 1명, 이사 100명 내외, 감사 2명, 실행이사 7명 내외
-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이사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 중에 이사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 회장 및 이사장의 당선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1인 후보는 찬, 반으로 결정한다.
 3. 회장 및 이사장 후보 자격은 최근 5년 동안 이사의 의무를 다한 자,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4. 선거권자의 자격은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5. 차기 이사장은 취임 2년 전에 선출하며 취임시까지 이사회에 참석한다.
 6. 이사는 실행이사회에서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7. 실행이사는 회장과 이사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8. 자문위원은 회장 또는 이사장을 역임한 정회원과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및 차기이사장으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이사장, 감사 및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 이사장 유고 시에는 차기 이사장, 총무, 기획, 학술, 국제 및 간행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제1조 (역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과 회장 선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 제2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자문위원과 실행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정회원(이사 제외) 3인으로 구성한다.
-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6년 11월 4일 제정)